

# Monthly Tax Newsletter

최신 주요 예규판례 | Issue 89

November 2021

삼성KPMG 세무본부 TKC



# 목 차

## 소득법인세 분야

1p

- [심판례] 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국조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에 대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의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개별납세방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심판례] A가 B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소)
- [예규]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합병법인(A)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주식(C)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A법인의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방법
- [예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재산소비세 분야

6p

- [판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승)
- [판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일부 납세자승)
- [심판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예규]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 [예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세법 제45조의3 과세 여부
- [예규] 상증령 제54조 제4항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 지방세 분야

10p

- [판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판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승)
- [심판례] 과점주주의 지분을 증가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을 증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선박투자회사 취득 원양어선이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 [예규]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 추정 여부
- [예규] 의료시설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여부

[소득법인세 분야]

[심판례] 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중 8435, 2021. 10. 18.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매출세액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 외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카지노 고객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경우 그의 배팅액과 게임시간, 시간당 게임횟수, 카지노 승률 등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생성·적립하여 주는 포인트)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조심2019중3462, 2021. 4. 21.).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에 대하여 납부한 매출세액은 사업상 증여로서 판매촉진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심판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국조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에 대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9 인 1688, 2021. 9. 27.

-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문언상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 역시 동 조약상 이자소득의 개념에 포함되고 다만 동 조약 같은 조 제5항 전단은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본조의 규정은 비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었을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의 법적성질이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에도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 점,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개념에 해당하는 한 동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그 개념이나 법적성질이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정상이자 초과분의 지급이자에 대해 동 조약의 체약국 법률인 우리나라 법인세법(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정상이자 초과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미 조세조약 어디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제한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의 규정은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이자를 초과한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 이자소득에 관한 제한세율의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정상이자 초과분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다시 국내세법을 이유로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정상이자분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2%)보다 낮은 제한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정상가격 초과이자분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이전가격세제 규정에 관한 위 사안과 달리 과소자본세제 규정상 기준초과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한·싱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자 v. 배당)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된다는 구 국조법 제28조(2018. 12. 31. 삭제)의 규정에 따라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 그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심판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의 법인세법 제 72 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 서 0620, 2021. 10. 25.

- 연결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면제해 준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고 있지 아니한 점, 연결납세방식 하에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는 하지 않고 제76조의17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결과세표준 신고가 제60조의 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하의 결손금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법인세법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위 사안과 달리,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의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

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20이 준용되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2019-법인-3964, 2020. 4. 13.).

**[심판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0 구 0237, 2021. 10. 21.

- 부과처분취소소송 뿐 아니라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소송물 또한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2두9261, 2004. 8. 16.),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기한 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불복절차 중에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쟁점사업의 인정을 신청하여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이 국내에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한 투자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는 점, 이 건 조특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쟁점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산자부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인정 시점 또는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제신청 시 산자부장관의 사업인정서 첨부를 요하지도 않은 점,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환급)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 10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1 전 1124, 2021. 10. 27.

- 2014사업연도 당시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9. 12. 31. 개정된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개정되었는데,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2013. 2. 15.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

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이 사용 및 지출 시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R&D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A가 B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0 구 8109, 2021. 10. 7.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A와 공동으로 출자한 내국법인인 B로부터 받을 미수배당금(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B가 이를 A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자 청구법인이 B의 차등배당에 동의하고 쟁점배당금을 제각하여 잡손실로 계상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B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들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에 귀속된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그 적용범위를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두8499, 2012. 1. 19. 전원합의체 판결), 그 법원칙은 세금을 국가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급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납세의무는 그 소득의 지급 시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확정되는데, 이러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확정방식으로 성립·확정된 원천징수의무를 소득의 실제 지급자인 B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해석은 실질과세원칙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설령 이 건 사실관계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쟁점배당금을 B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포기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함에도 배당 결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고, B는 배당 결의에 의하여 A에게 쟁점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점에서 동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의 묵시적 위임에 의하여 B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배당 결의에 따른 배당금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으로서 동 금원을 A에 실제 지급한 B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위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A가 수취한 쟁점배당금 상당의 소득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A가 얻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쟁점배당금의 실제 지급자라는 이유로 내국법인 B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면,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의 묵시적 위임에 의하여 B에게 이전되었다고 본다면,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예규]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9.

-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 27 조의 2 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예규] 합병법인(A)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주식(C)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A 법인의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2021. 10.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함에 따라 완전자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8 조의 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 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당해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2018. 5. 8.).
-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서면-2017-법인-3030, 2017. 11. 30.).

**[예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2021. 9. 30.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 조 제 6 항 제 1 호 라목 1)에 따른 정규 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 18 조 제 6 항 제 1 호 라목 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TKC 코멘트]**

- 조특법 제19조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를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성과급 지급시점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안임.

[재산소비세 분야]

**[판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 두 39447 판결

-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 사업장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TKC 코멘트]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별도의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고 할 것임(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참조).
- 위 2021두39447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본점 사업장의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 받았음. 이에 관하여 해당 판결의 1심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본점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

**[판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 42 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일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 두 41709 판결(심리불속행)

- 구 상증세법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만일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내지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이익으로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과는 별도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고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



[TKC 코멘트]

·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우회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하에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0조 제2호 나목을 증여세 과세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38982 판결 참조).

**[심판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6 조 제 12 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 조의 8 제 3 항 제 2 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 구 1132, 2021. 10. 8.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상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점,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특법 및 소득법에서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 규정의 경우 각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 및 유증 등의 개념 등을 달리 정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조특법 및 소득세법의 상속(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서 3281, 2021. 10. 14.

- 이 건 현물출자는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구주를 제공하고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주회사의 신주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현물출자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초로 증여되거나 명의신탁된 구주 또는 현물출자 취득 신주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애초에 수증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취득에 있어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는 구주와는 성질상 단절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추가로 자금의 투입이 없이 구주와 동등한 가치교환비용에 따라 신주를 대체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증자 사례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구주와 신주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건 현물출자가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 시 지분율 기준 충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

면, 합병 등에 의한 신주취득 사례와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구조 변경에 따라 주식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임(위 사안과 동일한 현물출자 사안의 경우 조심 2018서2777, 2019. 4. 16; 합병 사안의 경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사안의 경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각 참조).

**[심판례] 상증세법 제 42 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0 중 1958, 2021. 10. 14.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2019년말 현재 회사는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여부가 불투명 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반영된 날, 즉 분양 수입과 공사원가를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은 장기간의 사업과정을 거치므로 과세관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증여이익 산정시점)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시행사 주주의 재산가치 증가는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가 아닌 실제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 승인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2021. 10. 20.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예규]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 2021. 10. 19.

-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예규]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 10. 1.

- 특정법인이 주주 및 주주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상증세법 제 45 조의 5 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대상은 현물출자 전 주주이며 주식보유비율 적용기준은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 비율임.

### [예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세법 제 45 조의 3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 2021. 10. 27.

- 상증세법 제 45 조의 3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 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산입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예규] 상증령 제 54 조 제 4 항의 부칙 제 8 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 11. 2.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38 호로 개정된 상증령 제 54 조 제 4 항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지방세 분야]

[판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 9 조 제 2 항이 정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 두 43378 판결(심리불속행)

-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 만료 시에 경기도에 이 사건 건축물의 무상귀속이나 원상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해양항만청이 원고에게 제공한 입주자선정 안내서(안)에도 '입주자시설은 당해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임대기간 동안 소유·운영(연장기간 포함)한 후 항만청에 무상귀속 또는 원상회복'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경기도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도당사자는 양수도협약을 체결하고 양수자는 지체없이 경기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건축물을 경기도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관리업무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함.

[판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 6 조 제 1 호에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 두 45510 판결(심리불속행)

- 원고가 토지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신탁 하여 신탁등기를 한 때부터 신탁된 지분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토지신탁주식회사에게 이전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토지신탁주식회사가 각 1/2 지분을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 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신청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는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으로서(대법

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농지 외 부동산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택의 종료로 인한 신택 재산의 이전'에 해당한다거나,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TKC 코멘트]**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 재결례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었고 청구조합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부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2020지1461, 2021. 10. 18.).

**[심판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율 증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20 지 3440, 2021. 10. 7.

- 처분청은 종전에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보다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는 본래 취득행위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 건 법인)의 취득행위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증가된 지분율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 쟁점신택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 지 2593, 2021. 11. 2.

- 이 건 신택은 당초 위탁자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남는 잔여수익인 신택이익을 수익자(위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신택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과 이 건 건축물의 분양대금, 차입금,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등은 신탁재산으로 조성되고,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재산에서 충당되거나 위탁자의 부담으로 차입되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및 조세공과금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경비를 전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신탁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자의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신탁사무 처리의 결과물인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용역제공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공사비 등의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음. 한편, 쟁점회사계정차리자는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것이라 할 것임.

**[TKC 코멘트]**

· 관리형 토지신탁 수수료는 취득세 부과대상자인 신탁사(수탁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예규] 선박투자회사 취득 원양어선이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085, 2021. 9. 9.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을 나용선 계약으로 용선자가 원양어선으로 운영할 경우,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선박대여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4 조에서 감면주체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점, “외국항로 전용”의 의미를 ‘선박이 정기적으로 지나다니는 항로로만 운항하는 화물운송선과 여객운송선’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해석상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해당됨.

**[예규]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1, 2021. 11. 21.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출자법인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음날 제 3 자에게 49.9%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예규] 의료시설 지역자원시설세 3배 증가 여부**

지방세정책과-3966, 2021. 9. 14.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8 조 제 2 항 제 2 호 아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인 의료기관에의 해당 여부는 건축물 전체 층수가 아닌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층수가 5 층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TKC 코멘트]**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이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증가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함.
-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전체 층수를 토대로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가세하여야 할 것임(지방세운영과-347, 2015. 1. 29.).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mailto:kr-fmtaxtkc@kr.kpmg.com)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